

## 報道資料

이 자료는 2000.3.4(토) 조간부터 보도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題目 :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(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)

#### 主要內容

- 정부는 3.3(금) 15:00 과천청사(1동 724호)에서 이현재 재정  
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·노동부·복지부·건교부·  
금감위 등 관련부처장관과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 
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산·서민층의 재산형성촉진  
대책 등 최근의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음
- 정부는 중산·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 
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
- 저축·성과분배·주택관련제도 및 사적연금 등을 개선하기로  
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

별첨 : 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

報道資料 生產課 : 稅制室 所得稅制課 (☎ 500-5095)

金融政策局 保險制度課 (☎ 500-5360)

財政經濟部 公報官

**經濟政策調整會議 案件**

# **中產・庶民層 財產形成 促進對策**

**2000. 3. 3**

**財政經濟部**

## 〈 목 차 〉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현행 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지원제도 .....	2
III. 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지원강화 방안 .....	3
1. 저축제도 개선 .....	3
2. 성과분배제도 개선 .....	5
3. 내집마련지원 강화 .....	7
4.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.....	9
5. 기타 .....	11
IV. 향후 추진계획 .....	12

## I. 추진 배경

- 우리 경제는 '97년 외환 위기 이후 일관성 있는 구조 개혁의 추진 및 적극적인 대외 개방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
- 소득 분배면에서는 99년 1/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외환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
  - \* 지니 계수 : 97년(0.283), 98년(0.316), 99.1/4(0.333), 99.4/4(0.327)
- 특히 '98년 이후 중소기업 도산·실업자 증가 등으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서민층은 증가하여 이를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·빈곤감이 심각함에 따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
- 도시 근로 자가 구의 월 평균 소득은 97년 228만 원에서 98년 213만 원으로 6.7% 감소
- 중·저 소득층의 소득 절유율은 각각 97년 54.5%·8.3%에서 99년 52.5%·7.3%로 감소되었으며, 저축 여력도 감소 추세

<b>&lt;소득 계층별 월 평균 저축액&gt;</b>						
	96	97	증감율	98	증감율	99.4
저소득층	82.1	92.9	13.1	31.2	△66.4	△43.4
중소득층	440.6	512.0	16.2	445.5	△13.0	329.2
고소득층	1,162.8	1,258.7	8.3	1,363.6	8.3	1,164.5

\* 저소득층은 소득 분포 중 하위 20%, 중소득층은 20~80%, 고소득층은 상위 20%

- 따라서,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과 사회 통합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및 구조 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
  - 중산·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적극 지원토록 함

## II. 현행 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지원제도

- 중산·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는 주로 저축 및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원대상 및 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에서 다소 미흡
  - 노인·장애인 등 저소득·취약계층의 생계형저축은 근로자에 비해 세제지원이 미흡하며,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요건이 엄격
  - 우리사주조합·스톡옵션제도 등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성과분배형제도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이 미흡
  -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주택자금마련에 충당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형성이 곤란
- 따라서, 향후 중산·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
  - 저축제도·성과분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
  -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부담을 경감하고
  - 개인·기업연금등 사적연금제도를 보완하고자 함

### III. 중산·서민층 재산형성지원강화 방안

#### 1. 저축제도 개선

##### 가. 저소득·소외계층의 생계형저축 지원

###### ◆ 저소득·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

-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\*이 운용되고 있으나, 노인·장애인 등 저소득·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음
  - \* 근로자우대저축, 개인연금저축, 장기주택마련저축, 농어가목돈마련저축, 조합·새마을금고 예탁금·출자금, 장기저축성보험
- 따라서, 노인·장애인·생활보호대상자·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(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- \* 가입한도·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

##### 나. 중산·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

###### ◆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 「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」 시행

- 현재 10%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\*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·가입한도·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달라
  - 일반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, 부유층은 이를 모두 이용하여 형평성문제 초래
- \* 소액가계저축, 소액채권저축,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9개

- 따라서, 10%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 (일반인 4천만원, 노인·장애인 6천만원)내에서는 가입자격·통장수 등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
  -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「세금우대종합저축」 제도를 2001년 부터 시행
    - \* 4인가족 기준 1세대당 1억6천만원까지 가능
    - \*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

#### 다.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

##### ◆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

- 연급여 3,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「근로자 우대저축\*」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 말로 2년간 연장(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- \* 가입실적 : 3조5,252억 원, 149만좌(99.6현재)
-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\*」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 말로 2년간 연장(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- \* 가입실적 : 19,136억 원, 91만좌(99.6현재)

## 2. 성과분배제도 개선

### 가. 우리사주조합제도 개선

◇ 중소기업·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지원 및  
우리사주의 장기보유 지원

-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기안정적 주주확보를 위하여 '68년부터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·시행중이나,
  - 중소기업·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자사주 취득이 곤란하고 취득된 주식도 비상장이므로 환금성면에서 취약
- 따라서, 중소기업·저소득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경우,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등 지원근거 마련(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\* 제정추진)
  - \* '99.12월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후 현재 자동폐기될 예정이나, 16대 국회구성후 입법 재추진
- 조합원소유주식의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개장예정인 장외시장에서 비상장·비등록법인 호가증계 시스템을 활성화
- 또한,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(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
## 나. 스톡옵션제도 개선

### ◆ 스톡옵션 행사기간의 단축 및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증대에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, 근로자도 스톡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
  - 스톡옵션 행사요건중 행사제한기간(부여일로부터 3년)을 폐지하고, 2년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(금년중 증권거래법 개정)
  -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세제혜택\*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(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  - \* 행사이익중 연간 행사가격 3,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, 5,000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
  - 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(1인당 연간 행사가액기준 5천만원이내)을 폐지하여 행사가액에 관계 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(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  -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 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(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- 2000.5월까지 민간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표준모델(Best Practice)을 마련하여 객관적 성과측정 및 공정한 배분문제를 감안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

### 3. 내집마련지원 강화

#### 가.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

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체권(MBS·MBB)에 대한 이자소득  
저율과세·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 인하 및 주택대출  
이자에 대한 소득공제

-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대출채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,
  - 차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채권시장의 육성에도 도움
    - \* 99.9현재 45조원 수준인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6.2조원의 MBS·MBB를 발행(2000년중 1.7조원 발행추진)
- MBS·MBB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도모
  -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S·MBB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10%로 저율과세(금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)
  -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·MBB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수요기반 확대(상반기 중 관련감독규정 개정)
- 또한,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혜용(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개정)
  - \* 현재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 한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

## 나.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

### ◆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확대 및 임대주택공급 확대

#### □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의 지원대상 확대

- 지원대상 : 5인이상사업장 근무 무주택근로자  
→ 연소득 3,000만원이하의 무주택가구주
- 자금규모 : 5,500억원 → 3조원

구분	주택구입자금	전세자금
용자한도	최고6,000만원(주택가격의 1/3), 최고5,000만원(전세값의 1/2)	
적용이율	연 7.75% (4,000만원초과금액은 9.0%)	연 7.75% (3,000만원초과금액은 9.0%)
융자기간	15년(5년거치 10년 분할상환)	2년(2회4년연장)
대출대상 주택	전용면적 25평이하	좌동
신청기간	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후 3개월까지	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
취급은행	근로자 : 평화은행 서민 : 주택은행	좌동

#### □ 소형주택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인하

-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0.5%p 인하  
(8.5%→ 8.0%)

#### □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: 12만호 → 15만호

## 4. 사적연금제도 활성화

### 가. 기업연금의 활성화

#### ◆ 기업연금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

- 현행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법정적립금의 상당부분을 내부자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기업도산시 종업원의 퇴직금수령이 불확실
  - 나머지 자금도 보험사의 종업원퇴직보험\*과 퇴직보험\*형태로 외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,
    - 종퇴보험은 중도해약금이 기업주에게 주어져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약하며,
    - 퇴직보험은 99.3월 도입되어 아직 실적이 미흡
  - \* 종업원퇴직보험(99.6현재 15조원), 퇴직보험(99.10현재 1.6조원)
- 따라서, 퇴직금재원이 사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
  - 현재 보험사가 전담하는 기업연금(퇴직보험)의 취급기관을 은행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
  - \* 급년 3월부터 은행에서 「퇴직일시급선택」 취급예정

#### 나.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##### ◆ 소득공제 확대, 계약이전 허용, 일시납 종신연금상품 신설

- 개인연금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적보장(Personal Security)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'94년 도입되었으나 IMF위기 이후 가입이 둔화되고 있음

<개인연금의 수신액 증가추이> (단위:조원)

	'95	'96	'97	'98	'99.6말잔
· 회계연도별 순증액	3.6	4.5	2.7	1.6	15.9

-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편의성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,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연금상품을 도입

-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\*를 확대(정기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
\*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%(연72만원한도)까지 소득공제

-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

-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, 소득공제·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(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
- 일시납 종신연금상품(비과세)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 등을 보유한 중도퇴직자·노인등의 노후생활을 보장(상반기중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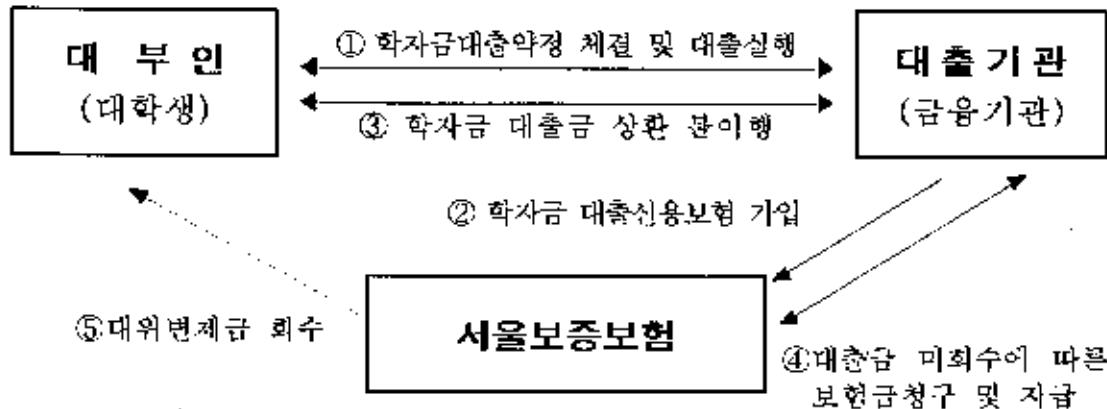
## 5. 기타

### 가. 서민층자녀 학자금대출 지원

#### ◆ 보증보험사의 보증을 통한 학자금대출 활성화

- 중산·서민가계의 경우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보증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
- 학자금대출시 대출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자금대출을 활성화
  - 다만, 대출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부분보상(약 70%내외)
  -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간 약정이 맺어지는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
    - \*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부모등의 보증도 가능

#### <학자금대출 신용보험 운영체계>



## 나.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

### ◆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

- 소외계층·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·기업주 등의 자선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(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 개정)

- 고아원·양로원·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
  - \* 현재는 소득금액의 5%한도내에서 소득공제
-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경우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%에서 10%로 확대
- 사업소득·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·배당소득,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금년중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정비
-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, 증권거래법, 근로자복지기본법, 관련 금융감독규정등을 조속히 제·개정